

농어촌공사, 농업인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오공환 기자 | 승인 2025.12.29 18:10 | □ 호수 1042

2026년 1월 시행...신규·기존 계약 농가 모두 혜택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농지 이용 활성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이를 전업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간 임대해 주는 제도다.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사업 관리와 사후관리 비용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25년 1월에는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했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영농 비용 증가로 농업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이번에 수수료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돼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중 각 지역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를 열고, 농업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오공환 기자 okh7303@hanmail.net